

#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77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1. 18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민간위탁 목적(사유)

- 안산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만료('15.12.31.)됨에 따라 해당사업의 경험에 풍부한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운영 함으로서 일자리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취업 종합 컨설팅 및 각종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.

## □ 민간위탁 내용

### 가. 위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, 제7조, 제8조
-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(위탁관리 및 운영)

### 나. 민간위탁 추진 경과

구 분 연도별	위탁업체	위탁기간	위탁금액(천원)	비고
2010년	(주) 사람인HR	2010.3.1.~2011.2.28	281,061	
2011년	(주) 사람인HR	2011.3.1.~2012.2.29	285,000	
2012년	(주) 사람인HR	2012.3.1.~2013.2.28	285,000	
2013년	(주) 사람인HR	2013.3.1.~2014.2.28	285,600	
2014년	(주)커리어넷	2014.3.1.~2015.2.28	323,400	
2015년	시	(주)커리어넷	2015.3.1~12.31(10월)	269,500
	동주민센터	(주)커리어넷	2015.6.1~12.31(7월)	341,880

※ 2010년 경기도에서 위탁업체 선정 후 시·군별 위·수탁 협약체결  
2011년 이후 자체선정 추진

## 다. 취업 실적 : (덧붙임 1 참조)

### 라. 2016년 민간위탁 개요

- 사업명 :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
- 사업기간 : 2016. 1. 1. ~ 2016. 12.31. (1년)
- 사업예산 : 1,030,000천원

#### \*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년도 임금보조 산정단가 및 보조비율 적용

- 컨설턴트 채용 및 관리(31명 기준) 인건비 : 930,000천원
- 취업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비 : 100,000천원

### 마. 위탁의 범위(대상)

- 컨설턴트 채용 및 관리
  - 일자리센터 6명, 동주민센터 25명
- 안산일자리센터 및 동 일자리상담창구 운영
- 취업지원사업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
- 기타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안산시장이 정하는 사업

### □ 위탁 필요성

- 전국적으로 취업전문 컨설팅업체를 공모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 추진 하므로써 전문업체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알선. 상담.발굴 및 다양한 취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매칭의 우월한 노하우를 채택 실행 할수 있으며, 심각한 취업난 해소와 고용률 증대효과 기대.
-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.알선 하므로서 구직자 개인의 성향분석 및 구인업체에 알맞은 적재적소의 구직인력 매칭 등으로 이직률 감소효과 기대.

불임문서

1. 일자리 상담 알선 및 취업실적 1부.
2. 관계 법령 1부.
3. 방침문서 1부.

(붙임 1)

## ○ 일자리 상담알선 및 취업실적

(기간 : 2009~2015.10월)

연도	구역	일·선행	취업	내선
2009	8,142	70,853	4,534	
2010	6,736	48,978	3,104	민간위탁
2011	7,858	39,470	4,311	민간위탁
2012	9,357	41,147	5,176	민간위탁
2013	10,812	43,226	6,192	민간위탁
2014	14,321	69,741	8,302	민간위탁
2015	계	17,674	87,022	13,284
	시	12,829	42,255	8,246
	동	4,845	44,767	5,038